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2. 14 선고 2020가단15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30694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2. 14 선고 2020가단1538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형

변론종결 2021. 12. 21.

판결선고 2022.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7. 4. 접수 제363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추심금 지급청구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울산 울주군 E 일원의 F일반산업단지(이하 'F일반산업단지'라 한다)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계약금 및 이자 합계 210,000,000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7.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338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판결에 따른 합계 237,041,096원의 반환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C에 대하여 F일반산업단지 중 G롯트에 관하여 갖는 분양잔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1.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4151호로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은 2018. 6. 11. C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1. 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합10510호로 'C는 원고에게 237,04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심금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금판결은 2020. 11.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1) 피고는 1982. 4. 5.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C는 2008. 9. 11.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12. 10. 주식회사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5. 1. 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8. 5. 11. 이 법원 2018호협22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고, 2018. 6. 27. C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4) 피고는 2018. 7. 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5) 피고와 C 사이의 자녀는 3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4 내지 16호증,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또는 적어도 1/2 지분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산분할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가 C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10. 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 그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C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1개월 전인 2018. 5. 1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8. 6. 11. C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재산분할이 그 이후인 2018. 7.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5. 6. 17. D과의

사이에 D이 F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내에 근린생활 및 기숙사를 건축하고 이를 C에게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C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D의 C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인 D의 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대금채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2018. 7. 2.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추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갑 제2, 5호증, 을 제3,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적극 재산	경남 산청군 J 전 2,327㎡	16,000,000원	2021. 4. 27.자 매매가액
	울산 동구 K아파트 L호	321,900,000원	다툼 없음
	울산 북구 M 전 273㎡	41,223,000원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른
	울산 북구 N 임야 1,408㎡	56,320,000원	2019. 6. 7.자 감정평가액으 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
	울산 울주군 O 지상 5층 건물	825,946,000원	다툼 없음
	울산 P 대 452㎡ 관련 D에 대한 채권	310,000,000원	아래 문단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420,651,120원	을 제8호증
	합계	1,992,040,120원	
소극 재산	위 K아파트 L호에 관한 Q조합 명의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	228,000,000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대출금액은 228,000,000 원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 시 이자 등의 납입지체는 없 었던 것으로 보임
	위 K아파트 L호에 관한 R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5,000,000원	다툼 없음
	울산 북구 M 전 273㎡, N 임야 1,408㎡에 관한 R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채권최고액과 동일(실제 피 담보채무액 자료 없음)
	울산 울주군 O 지상 5층 건물에 관한 주식 회사 S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40,000,000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대출금은 840,00,0000원 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자 등의 납입지체는 없었 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조합 명의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	190,000,000원	을 제8호증
	원고에 대한 채무	237,041,096원	갑 제2호증
	합계	1,740,041,096원	

피고는 C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울산 울주군 P 대 452㎡(이하 'P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8. 8. 7. P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실질적 소유권의 개념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C가 2015. 6. 17.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8, 제5, 6,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4. 9. 26. D에 3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1,400,000,000원 중 토지는 400,000,000원, 건물은 1,000,000,000원을 차지하나 분양대금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C가 2016. 4. 26. 주식회사 S으로부터 84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주식회사 S이 P 대지 및 울산 울주군 O 지상 5층 건물(이는 P 대지의 지상 건물이다)을 C의 재산으로 보아 감정을 한 사실, C는 2017. 3. 24. 울산 울주군 O 지상 5층 건물(이는 P 대지 지상의 건물이다)에 관하여 2017.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000,000,000원인 사실, P 대지에 관한 C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은 2018. 8. 7.자 매매이고 그 등기부상 가액은 314,51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위 송금액이 P 대지의 등기부상 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위 송금액 외에 C가 D에 송금한 다른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C가 P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결과적으로 취득한 점, 원고가 위 310,000,000원이 P 대지 지상 건물의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채무초과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송금액 31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P 대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C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D을 상대로 위 310,000,000원의 송금액에 상응하는 재산권¹⁾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적극재산 합계액은 1,992,040,12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1,740,041,096원이므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C의 적극재산은 1,571,389,000원(= 1,992,040,120원 - 420,651,120원)이, 소극재산은 1,550,041,096원(= 1,740,041,096원 - 190,000,000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일

[별지]

목 록

1. 경주시 T 대 545㎡

2. 경주시 U 대 123㎡

3. 경주시 T, U

일반목구조 아스팔트섬글지붕 2층 단독주택 V동

1층 91.2㎡

2층 61.74㎡

4. 경주시 T, U W동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40.79㎡. 끝.

1) 채권 내지 재산권으로서의 분양기대권 정도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